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[별지 제11호의6서식] <개정 2024. 3. 22.>

# 창업자금 [ ] 특례신청서 [ ] 사용내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## 1. 기 본 사 항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수증자 | ① 성 명 | | ② 주민등록번호 | |
| | ③ 주 소 | (전화번호: ) | | |
| | ④ 증여자와의 관계 | | ⑤ 전자우편주소 | |
| 증여자 | ⑥ 성 명 | | ⑦ 주민등록번호 | |
| | ⑧ 주 소 | (전화번호: ) | | |

## 2. 신 청 내 용 (※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)

| ⑨ 수 증 일 | ⑩ 재 산 종 류 | ⑪ 증 여 재 산 가 액 | ⑫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## 3. 사 용 내 역

| 증여받은 재산내역 | | | 사 용 내 역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⑬ 수증일 | ⑭ 재산종류 | ⑮ 가 액 | ⑯ 사용일자 | ⑰ 사용용도 및 내역 | ⑱ 사용금액 | ⑲ 비 고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7조의5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자금 ([ ]특례신청서, [ ]사용내역서)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**세 무 서 장** 귀하

### 작성방법

1.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. 기본사항과 2. 신청내용만을 적습니다.
2.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. 기본사항과 3. 사용내역만을 적습니다.
3. ⑪ 증여재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.
4. ⑰ 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재산의 사용용도(예 : 사업용자산 취득,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)를 적고, 사용 관련 증명서류 (예: 취득자산 명세, 대금지급 증빙, 주식 및 채권의 매각내역 등)를 별지에 첨부합니다.
5. ⑲ 비고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6.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부표1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210㎜×297㎜[중질지(80g/㎡(재활용품)]
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[별지 제11호의6서식 부표1] <개정 2023. 3. 20.>

# 신규 고용명세서

※ 신규 고용명세서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고 10명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작성합니다.

| ① 성명 | ② 주민등록번호 | ③ 주소 | ④ 입사일 | ⑤ 퇴사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210㎜×297㎜[중질지(80g/㎡(재활용품)]